투자 위험 등급 : 5 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공모주(SPAC 포함) 등의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에 자산총액의 90% 이하를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식가격변동위험, 공모주투자위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알파 시나브로 공모주 증권 투자신탁1호[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시나브로 공모주 증권 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파 시나브로 공모주 증권 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alph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2년 07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년 08월 03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 (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 www.alphasset.com 및 본점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멍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매입하는 집합투자증권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 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2.07.20)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펀드코드 : A5710)

투자 위험 등급 :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공모주(SPAC 포함) 등의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에 자산총액의 90% 이하를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식가격변동위험, 공모주투자위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SPAC포함) 등의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에 자산총액에 90%이하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상승 및 이자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추가자금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이내**	0.942	0.50	1.13	0.9443	145	244	349	573	1,2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442	1.00	1.40	1.4443	145	297	456	800	1,820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25%이내**	0.742	0.30	0.89	0.744	99	178	260	437	9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092	0.65	1.03	1.0943	110	225	346	606	1,380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피투자지구의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주2) 종류별(Class A와 Class C)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보수체감형(CDSC) 클래스의 경우 1 년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30~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21/07/21 ~ 2022/07/20	2020/07/21 ~ 2022/07/20	2019/07/21 ~ 2022/07/20	2017/07/21 ~ 2022/07/20	(%)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 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2011-11-11	0.57	5.58	5.56	4.94	4.83
비교지수	2011-11-11	-5.22	1.57	1.99	1.22	2.28
수익률 변동성(%)	2011-11-11	4.28	4.7	5.3	4.18	3.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2011-11-11	0	0	0	-0.07	-0.07
비교지수	2011-11-11	0	0	0	-0.86	-0.13
수익률 변동성(%)	2011-11-11	0	0	1.32	1.32	1.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2011-11-16	-0.87	4.08	4.06	3.4	2.45
비교지수	2011-11-16	-5.22	1.57	1.99	1.22	1.39
수익률 변동성(%)	2011-11-16	4.28	4.71	5.3	4.18	3.5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2-01-18	-0.38	4.59	4.58	3.95	3.67
비교지수	2012-01-18	-5.22	1.57	1.99	1.22	2.17
수익률 변동성(%)	2012-01-18	4.28	4.71	5.3	4.18	3.5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2-03-02	-0.53	4.44	4.42	3.8	3.44
비교지수	2012-03-02	-5.22	1.57	1.99	1.22	2.03
수익률 변동성(%)	2012-03-02	4.28	4.71	5.3	4.18	3.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012-11-20	-0.68	4.08	4.13	3.52	2
비교지수	2012-11-20	-5.22	1.38	1.87	1.15	1.22
수익률 변동성(%)	2012-11-20	4.28	4.67	5.28	4.17	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013-11-18	0.78	5.15	4.92	0	2.32
비교지수	2013-11-18	-2.77	2.87	2.86	0	1.03
수익률 변동성(%)	2013-11-18	3.42	4.33	5.08	4.09	3.8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0.18	4.8	4.79	4.18	4.24
비교지수	2014-04-22	-5.22	1.57	1.99	1.22	1.91
수익률 변동성(%)	2014-04-22	4.28	4.71	5.3	4.18	3.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014-12-15	-0.28	4.7	4.68	4.02	3.62
비교지수	2014-12-15	-5.22	1.57	1.99	1.22	1.96
수익률 변동성(%)	2014-12-15	4.28	4.71	5.3	4.18	3.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50)	2016-06-10	0	0	-1.96	0.08	0.52
비교지수	2016-06-10	0	0	-1.53	-0.89	0.1
수익률 변동성(%)	2016-06-10	0	0	3.02	2.5	2.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16-08-30	-0.38	4.59	4.58	3.95	3.71
비교지수	2016-08-30	-5.22	1.57	1.99	1.22	1.85
수익률 변동성(%)	2016-08-30	4.28	4.71	5.3	4.18	3.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2016-09-02	-0.28	4.7	4.68	4.06	3.82
비교지수	2016-09-02	-5.22	1.57	1.99	1.22	1.85
수익률 변동성(%)	2016-09-02	4.28	4.71	5.3	4.18	3.88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03-13	-0.18	4.8	4.79	4.21	3.87
비교지수	2017-03-13	-5.22	1.57	1.99	1.22	1.81
수익률 변동성(%)	2017-03-13	4.28	4.71	5.3	4.18	4.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2018-10-31	-0.2	4.78	4.77	0	4.31
비교지수	2018-10-31	-5.22	1.57	1.99	0	2.19
수익률 변동성(%)	2018-10-31	4.28	4.71	5.3	0	4.78
수수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1-11-03	-	-	-	-	-3.35
비교지수	2021-11-03	-	-	-	-	0
수익률 변동성(%)	2021-11-03	-	-	-	-	3.59
수수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2-01-26	-	-	-	-	-1.29
비교지수	2022-01-26	-	-	-	-	-4.61
수익률 변동성(%)	2022-01-26	-	-	-	-	4.2

(주 1) 비교지수 : (KO SPI X 20% + KOBI120 X 50% + CD91 X 3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주식형,단위:%))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정민규	1991	책임	11 개	2,268 억원	-	-	0.57	11.47	11 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변동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 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SPAC 의 사업목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	SPAC 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SPAC 의 존속 기한동안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SPAC 은 청산되며 이에 따라 SPAC 투자의 주요한 목적인 합병차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SPAC 은 사전에 합병대상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SPAC 의 경영진 및 발기인들의 M&A 경험과 투자 발굴(Deal Sourcing)능력 등이 해당 SPAC 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위험	SPAC 의 경우 관련 제도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의 경우 상장일 거래가격이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td><td>국가위험</td><td colspan="3">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정치・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2">매입방법</td><td colspan="2">・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 rowspan="2">환매방법</td><td rowspan="2">・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3 시 30 분시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5 영업일(D+4)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A, A-E, C, C2, C3, C4, C-E, C-I50, C-I100, C-I300, C-W, S, A-G, C-G, Cf: 90 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 C-P, C-Pe, P, P-E : 없음</td></tr>
<tr><td rowspan="2">기준가</td><td>선정방법</td><td colspan="3">*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 colspan="3">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alph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td></tr>
<tr><td rowspan="4">과세</td><td colspan="4"><table><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table></td></tr>
<tr><td colspan="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수익증권 및 종류 C-Pe 수익증권 가입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P 수익증권 및 종류 P-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td></tr>
</table>

전환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번호: 02-769-760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lph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 조 좌
효력발생일	2022 년 08 월 03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alph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50~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가입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0.5% 이내 부과됩니다. .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 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C)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됩니다. (I-50,100,300 는 최초 납입금액이 각 50 억,100 억,300 억원 이상인 투자자)
	랩(W)	Wrap Account 가입한 투자자(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의미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됩니다.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기관(f)	법 제 9 호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이 매입 가능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 설명서	**전자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lph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lphasset.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lphasset.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 명칭 : 알파 시나브로 공모주 증권 투자신탁 1호 [주식혼합] (A5710)

나 . 종류형 명칭 :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5711
수수료선취-온라인(A-E)	BM38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P3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A57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57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57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57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57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3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50)	A57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100)	A57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300)	A57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A57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F3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F4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CG94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0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N7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N73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lph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 명칭 : 알파 시나브로 공모주 증권 투자신탁 1호 [주식혼합] (A5710)

나 . 종류 :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5711
수수료선취-온라인(A-E)	BM38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P3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A57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57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57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57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57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3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50)	A57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100)	A57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300)	A57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A57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F3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F4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CG94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0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N7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N73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1.11.11	최초설정
2013.03.06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등(규약 변경)
2013.04.09	변경등록(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09.10	변경등록(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12.10	변경등록(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4.02.21	변경등록(종류 S 수익증권 신설 등)
2014.06.03	변경등록('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2014.10.06	변경등록(주식운용팀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4.12.15	변경등록(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4.12.30	변경등록(채권운용팀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5.01.22	변경등록(주식운용팀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5.12.02	변경등록(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6.07.02	변경등록(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15	변경등록(종류 C-P, P 수익증권 신설)
2016.07.30	변경등록(국내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환매 기준시점 변경)
2016.09.23	변경등록(종류 C-I100, C-I300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2016.11.30	변경등록(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익률 변동성 반영)
2016.12.27	변경등록(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7.02.01	변경등록(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현황 업데이트)
2017.02.21	변경등록(종류 A-E 수익증권 신설 및 종류 S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2017.03.28	변경등록(주식운용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등)
2017.04.29	변경등록(종류 A-G, C-G 수익증권 신설 및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2017.08.11	변경등록(투자대상자산 변경 (환매조건부매수 추가))
2017.11.21	변경등록(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익률 변동성 반영)
2017.12.28	변경등록(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8.02.05	변경등록(집합투자업자보수율 등 인하)
2018.03.12	변경등록(주식운용팀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10.26	변경등록(종류 P-E 수익증권 신설 등)
2019.01.10	변경등록(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9.06.25	변경등록(투자대상자산 추가)
2019.09.25	변경등록(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19.10.14	변경등록(상호변경,본점이전,일반사무관리사 변경)
2019.12.13	변경등록(정기갱신,운용역 변경)
2020.04.01	변경등록(정기갱신,운용역 변경)
2020.07.01	변경등록(정기갱신,고유재산투자현황 변경)
2021.06.15	변경등록(운용역 변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2021.10.07	변경등록(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종류 C-Pe, 종류 Cf 수익증권 신설)
2022.07.13	변경등록(정기갱신 및 기업공시사석 개정사항 반영)
2022.08.03	변경등록(책임운용역변경, 부책임운용역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31, SK 증권빌딩 9 층
	(대표전화 : 02-769-76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주식형,단위:%))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민규	1991	책임	11개	2,268억원	-	-	0.57	11.47	11개월

성명	이력
정민규	2019.01 ~2021.06 :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 2021.07 ~ 현재 : 알파자산운용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 성과이며 ,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팀	변경 사항	성명	운용기간
멀티에셋본부	책임운용전문인력	허찬종	2015.01 ~ 2018.03
		이창배	2014.12 ~ 2019.12
		오한일	2018.03 ~ 2021.06
		황인호	2021.06 ~ 2022.08
		정민규	**2022.08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대철	2019.12 ~ 2021.06
		한희진	2019.12 ~ 2020.03
		정민규	**2021.10 ~2022.08**

주 1)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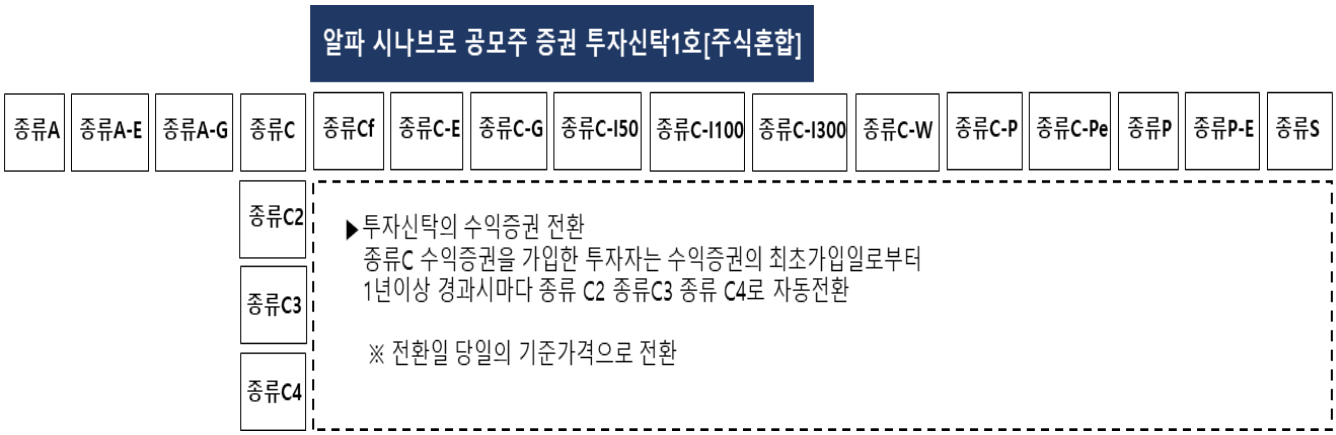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 판매경로 -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가입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0.5% 이내 부과됩니다. .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 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C)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됩니다. (I-50,100,300 는 최초 납입금액이 각 50 억,100 억,300 억원 이상인 투자자)
	랩(W)	Wrap Account 가입한 투자자(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의미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됩니다.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기관(f)	법 제 9 호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이 매입 가능합니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① 종류 C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 년 이상 경과시마다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②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최초 매입이 불가능한 종류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 등의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에 자산총액에 90%이하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상승 및 이자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주식	90% 이하 (공모주를 제외한 주식은 20% 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과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것 및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것,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 등에 한한다) ※공모주: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 발행하는 것

②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주식관련사채 포함,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이상)
④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생상품	10% 미만 (위험평가액기준)	법 제 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헷지 목적으로 거래)
⑥집합투자증권등	40% 미만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단, 공모주를 제외한 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2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⑦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채권 및 채무증서 총액 기준)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⑧증권의 대여	50% 이하 (증권총액 기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⑨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 기준)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수 (자산총액 기준)	40% 이하
⑪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⑫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30일 이내의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⑬금융기관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⑫과⑬의 투자는 투자신탁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부터 ④규정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④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②동일종목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 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_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투자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⑤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u>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u>**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⑥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후순위 채권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투자대상' ⑤ 내지 ⑩, '나. 투자제한' ② 내지 ④ 및 ⑤의 가,라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제한' ②본문 ,④, ⑤의 가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의 규정은 이 투자	

	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등급 하락 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사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주식투자전략

① 공모주 투자전략

○ 적극적인 공모주 투자전략에 운용역량 집중

○ 주된 주식운용전략으로서 약관상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

○ 가치투자기법에 근거한 Valuation 매력 여부(절대 및 상대평가)와 시장 트렌드, 테마 등 모멘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목 선별

○ 예상 공모가격이 상대가치 또는 적정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선정

○ 공모주투자 운용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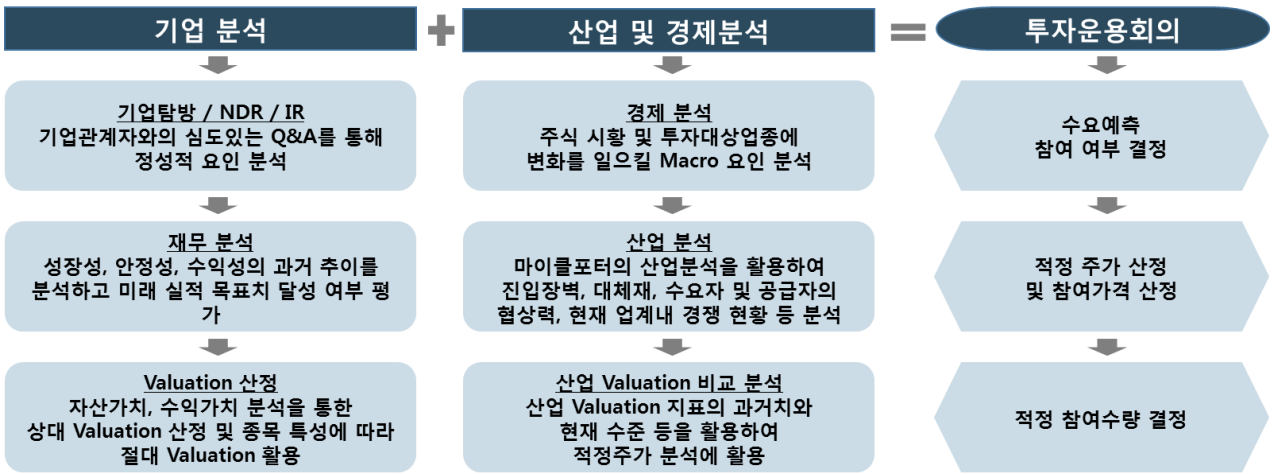

② 일반(상장)주식 투자전략

○ 투자대상: 상장주식(ETF 포함)

○ 투자한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공모주 투자 이외의 추가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시황에 따른 탄력적 자산배분전략 병행

○ 대형주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압축된 포트폴리오 전략 구사

○ 시황, 테마흐름에 따라 ETF 투자 병행(섹터, 리버스, 레버리지 등)

2) 채권투자전략

-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A-)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추구

- 이자수익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공모주 투자에 필요한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둠.
- Credit Risk의 엄격한 관리하 절대금리 투자로 펀드 전체의 수익기반 공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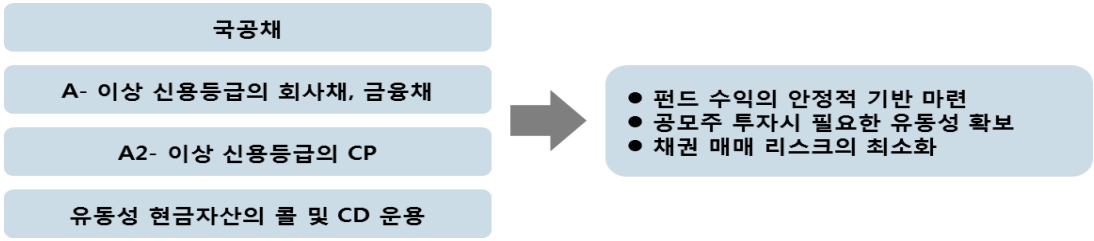

☞ **채권 투자대상**

※ 비교지수 : (0.2 * [KOSPI]) + (0.5 * [KOBI120]) + (0.3 * [CD금리])

주1) 이 투자신탁은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2) 비교지수는 산출기관의 상황, 시장 상황,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 지수의 등장 및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참조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조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내역을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위험 관리

①주된 주식운용전략인 공모주 투자의 경우 상장후(또는 락업해제후) 조기 매도를 통해 주식보유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개별 전략 수익/손실을 관리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포지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③회사채 편입시 영업환경,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 불이행위험 존재하며, 편입종목 Default 발생시 회수불가능 위험 및 채권회수 위한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 존재합니다.

④금리상승시 금리선물을 통해 듀레이션 조절로 위험관리를 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주 등의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그 밖에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시장변동성의 증감에 따른 위험관리를 하고,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

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변동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 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SPAC의 사업목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SPAC의 존속 기한동안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SPAC은 청산되며 이에 따라 SPAC투자의 주요한 목적인 합병차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SPAC은 사전에 합병대상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SPAC의 경영진 및 발기인들의 M&A경험과 투자 발굴(Deal Sourcing)능력 등이 해당 SPAC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위험	SPAC의 경우 관련 제도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의 경우 상장일 거래가격이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정치・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SPAC 은 일반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부진할 수 있어 시장매각 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하락으로 집합투자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 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에 의하여 수익자의 환매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 위험	투자신탁 설정 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하여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21.11.10)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의 변동성이 4.98%인** 투자신탁으로 투자등급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며 주로 공모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156 주)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 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후 매 결산시마다 과거 3 년간 수익률의 변동성을 재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파자산운용 위험등급 기준표 (연 환산 표준편차 기준)>

위험등급	1(고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가입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0.5% 이내 부과됩니다. .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 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C)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 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 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됩니다. (I-50,100,300 는 최초 납입금액이 각 50 억,100 억,300 억원 이상인 투자자)
랩(W)	Wrap Account 가입한 투자자(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의미합니다.
기관(f)	법 제 9 호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이 매입 가능합니다.
무권유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저비용(G)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됩니다.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매입이 가능합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1 영업일 (D)	제 2 영업일(D+1)	제 3 영업일(D+2)
15 시 30 분 이전 매입 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15 시 30 분 경과 후 매입 시	자금납입일	-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 1 영업일(D)	제 2 영업일(D+1)	제 3 영업일(D+2)	제 4 영업일(D+3)	제 5 영업일(D+4)
15 시 30 분 이전 환매 시	환매청구일	-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15 시 30 분 경과 후 환매 시	환매청구일	-	-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주2)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A -E	종류 A-G	종류 C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종류 C-G	종류 C-I50	종류 C-100	종류 C-I300	종류 C-W	종류 S	종류 C-P	종류 C-Pe	종류 P	종류 P-E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주 1) 단, 재투자 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주 2)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전환청구(자동전환)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 및 전환된 수익증권이 집합투자규약 제 4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별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 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3시 30분) 이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 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①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입일 또는 전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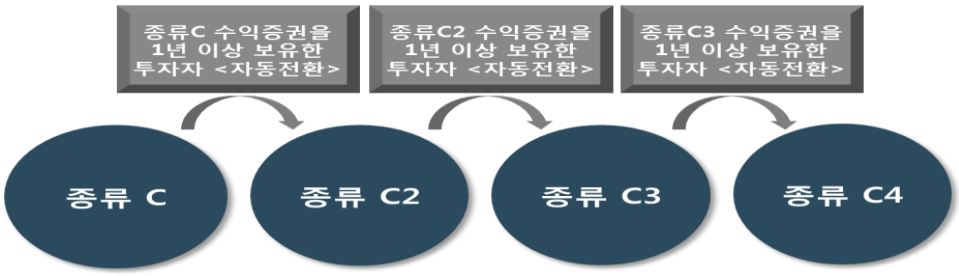

②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최초 매입이 불가능한 종류 수익증권으로서 수익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하여야 한다.

③1 항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하고,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 대금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⑤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전환청구(자동전환)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 및 전환된 수익증권이 집합투자규약 제 4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별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 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http://www.alphasset.com)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하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최종시가 없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어음 및 채무증서 등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기타자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0.5% 이내	-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25%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에				

<table>
<tr><th rowspan="2">명칭
(클래스)</th><th rowspan="2">가입자격</th><th colspan="4">수수료율</th></tr>
<tr><th>선취
판매수수료</th><th>후취
판매수수료</th><th>환매
수수료</th><th>전환
수수료</th></tr>
<tr><td>무권유저비용(A-G)</td><td>가입하는 투자자</td><td rowspan="18">-</td><td rowspan="18"></td><td rowspan="13"></td><td rowspan="18"></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td><td>가입제한 없음</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2)</td><td>종류 C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3)</td><td>종류 C2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4)</td><td>종류 C3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C-E)</td><td>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td><td>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td><td>법 제 9 호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I50)</td><td>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I100)</td><td>최초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I300)</td><td>최초 납입금액이 300 억원 이상인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td><td>Wrap Account 가입한 투자자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td><td rowspan="4">-</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P)</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P-E)</td><td>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
<tr><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 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후취 판매수수료 0.15% 이내)</td><td>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td><td>90 일미만 이익금의 70%</td></tr>
<tr><td colspan="2">부과기준</td><td>매입시</td><td>환매시</td><td>환매시</td><td>-</td></tr>
</table>

주 1) 환매수수료 부과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주 2)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전환청구(자동전환)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 및 전환된 수익증권이 집합투자규약 제 4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별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주 3)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 A 수익증권 기준 납입금액 0.5%이내, 종류 A-E, A-G 수익증권 기준 납입금액의 0.25%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주 4) 후취판매수수료는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0.15%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주 5)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 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펀드명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보수합계	개별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합성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0.40	0.00	0.025	0.017	0.442	0.00	0.442	1.40	0.442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40	1.00	0.025	0.017	1.442	0.0023	1.4443	1.40	1.45	0.321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40	0.50	0.025	0.017	0.942	0.0023	0.9443	1.13	0.9502	0.34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40	0.65	0.025	0.017	1.092	0.0023	1.0943	1.03	1.1006	0.35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40	0.80	0.025	0.017	1.242	0.0023	1.2443	1.40	1.2512	0.40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40	0.60	0.025	0.017	1.042	0.0002	1.0422	1.40	1.0453	0.295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40	0.30	0.025	0.017	0.742	0.0022	0.7442	0.00	0.7504	0.34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40	0.40	0.025	0.017	0.842	0.0023	0.8443	1.40	0.8493	0.31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40	0.01	0.025	0.017	0.452	-	0.452	-	0.45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50)	0.40	0.30	0.025	0.017	0.742	0.00	0.742	1.40	0.742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100)	0.40	0.05	0.025	0.017	0.492	-	0.492	-	0.49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300)	0.40	0.03	0.025	0.017	0.472	-	0.472	-	0.47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40	0.50	0.025	0.017	0.942	0.0022	0.9442	1.40	0.9496	0.32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40	0.25	0.025	0.017	0.692	0.00	0.692	0.0	0.6998	0.16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0.40	0.40	0.025	0.017	0.842	0.0023	0.8443	1.40	0.8497	0.320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40	0.31	0.025	0.017	0.752	-	0.752	-	0.752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0.40	0.66	0.025	0.017	1.102	-	1.102	-	1.102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40	0.30	0.025	0.017	0.742	0.0020	0.7440	0.89	0.7501	0.322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P-E)	0.40	0.32	0.025	0.017	0.762	0.0023	0.7643	1.03	0.7703	0.3428
지급시기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시**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주1)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2020.11.11~2021.11.10)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기타비용 종류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등 그외 기타비용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20.11.11~2021.11.10)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종류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증권등의 매매수수료, Repo거래 중개수수료, 대차거래관련 수수료 등

주3)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금융비용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거래비용	226,371,131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779,160

주4)설정 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된 비용을 기재합니다.

주5)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 원)

펀드명	구분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91	139	244	5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4	91	140	246	5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296	455	798	1,81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5	297	456	800	1,8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243	347	571	1,23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5	244	349	573	1,2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	224	345	605	1,37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0	225	346	606	1,3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	255	392	687	1,56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5	256	393	689	1,5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	214	329	577	1,3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5	215	330	579	1,31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4	152	234	410	9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4	153	235	412	9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4	173	266	467	1,0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5	174	267	468	1,0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5	93	142	250	5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6	94	145	254	5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5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4	153	235	411	93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5	153	236	413	9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1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9	101	155	272	61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0	102	157	275	6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3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97	149	261	5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8	98	150	264	6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94	298	522	1,18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5	194	299	523	1,1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9	142	218	382	8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0	144	221	387	8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4	173	266	467	1,0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5	174	267	468	1,06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179	262	441	97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0	179	262	441	9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226	347	609	1,3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0	226	347	609	1,386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9	177	259	435	9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9	178	260	437	9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6	157	241	422	96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7	157	242	424	965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별(Class A와 Class C)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증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시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 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 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준가와 과표 기준가는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일반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수익증권 및 종류 C-Pe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간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2017.01.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주 1)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주 2) 연금외수령시 과세는 통상적인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 각각 2014 년 1 월 1 일 이후 및 2015 년 1 월 1 일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주 3)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4) 상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P 수익증권 및 종류 P-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17.01.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주) 상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과세이연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방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9기(2019.11.11 ~ 2020.11.10)	회계감사면제	해당사항 없음
제10기(2020.11.11 ~ 2021.11.10)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11기(반기)(2021.11.11 - 2022.05.10)	**삼화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11 기(반기)**	**제 10 기**	**제 9 기**
	2022.05.10	**2021.11.10**	**2020.11.10**
운용자산	101,494,907,635	104,165,974,011	22,341,503,574
유가증권	56,261,777,291	73,920,676,388	17,479,604,42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233,130,344	30,245,297,623	2,894,610,597
기타 운용자산	38,000,000,000	0	1,967,288,551
기타자산	1,030,007,264	1,410,441,394	1,163,204,382
자산총계	102,524,914,899	105,576,415,405	23,504,707,95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01,535,699	9,793,908,434	1,216,185,370
부채총계	401,535,699	9,793,908,434	1,216,185,370
원본	100,627,855,066	95,782,531,364	22,288,522,586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530,082,833	-24,393	0
자본총계	100,097,772,233	95,782,506,971	22,288,522,586
운용수익	180,270,150	5,204,261,375	603,863,000
이자수익	666,955,097	739,503,722	243,434,905
배당수익	347,908,217	168,600,797	71,646,475
매매평가차손익	-871,462,200	4,254,268,680	286,419,131
기타수익	36,869,036	41,888,176	2,362,489
운용비용	502,737,960	681,681,205	178,906,371
관련회사보수	492,504,176	676,242,115	177,202,519
매매수수료	5,108,756	0	730,252
기타비용	5,125,028	5,439,090	973,600

당기순이익	-322,467,810	4,522,580,170	424,956,629
매매회전율	324	435	17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 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1 기(반기)	제 10 기	제 9 기
	2022.05.10	2021.11.10	2020.11.10
운용자산	101,494,907,635	104,165,974,011	22,341,503,574
현금및예치금	7,233,130,344	30,245,297,623	2,894,610,597
현금및현금성자산	7,200,290,084	30,245,297,623	2,861,770,337
증거금	32,840,260	0	32,840,260
대출채권	38,000,000,000	0	1,967,288,551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8,000,000,000	0	0
매입어음	0	0	1,967,288,551
유가증권	56,261,777,291	73,920,676,388	17,479,604,426
지분증권	20,344,683,027	20,815,908,262	5,104,662,173
채무증권	29,408,143,483	46,383,879,736	9,957,052,763
수익증권	6,508,950,781	6,720,888,390	2,417,889,490
기타자산	1,030,007,264	1,410,441,394	1,163,204,382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3,374,017	0	157,533,888
미수이자	242,602,585	223,065,894	68,540,518
선급비용	96,160,139	83,836,327	0
기타미수입금	649,873,841	1,103,539,173	858,323,884
자 산 총 계	17,996,682	0	78,806,092
기타부채	102,524,914,899	105,576,415,405	23,504,707,956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401,535,699	9,793,908,434	1,216,185,370
해지미지급금	0	4,066,260	8,404,210
미지급운용수수료	175,966,716	378,456,746	32,918,133
미지급판매수수료	92,367,856	97,816,841	20,287,338
미지급수탁수수료	121,107,445	139,923,991	28,163,825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5,772,707	6,113,311	1,267,576
수수료미지급금	3,925,327	4,156,902	861,802
미지급이익분배금	2,395,648	2,574,930	95,200
부 채 총 계	0	9,160,799,453	1,124,187,286
원 본	401,535,699	9,793,908,434	1,216,185,370
이익잉여금	100,627,855,066	95,782,531,364	22,288,522,586
자 본 총 계	-530,082,833	-24,393	0
부채 및 자본 총계	100,097,772,233	95,782,506,971	22,288,522,586
총좌수	100,424,995,209	94,765,185,554	22,116,603,350
기준가격	998.96	1000.00	1000.00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1 기(반기)	제 10 기	제 9 기
	2021.11.11 ~ 2022.05.10	2020.11.11 ~ 2021.11.10	2019.11.11 ~ 2020.11.10
운용수익(운용손실)	180,270,150	5,204,261,375	603,863,000
투자수익	1,026,018,061	949,992,695	317,443,869
이자수익	666,955,097	739,503,722	243,434,905
배당금수익	347,908,217	168,600,797	71,646,475
수수료수익	11,154,747	41,888,176	2,362,489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413,880,493	7,201,785,898	2,041,491,372
지분증권매매차익	3,136,951,933	5,104,292,822	1,847,323,825
채무증권매매차익	24,992,388	5,165,465	10,405,266
지분증권평가차익	1,251,906,950	2,090,453,524	178,700,629
채무증권평가차익	29,222	1,874,087	5,061,652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5,285,342,693	2,947,517,218	1,755,072,241
지분증권매매차손	3,125,674,112	881,648,724	934,602,239
채무증권매매차손	134,061,614	382,451,132	87,190,290
지분증권평가차손	1,908,696,937	1,524,141,160	733,019,112
채무증권평가차손	116,910,030	159,276,202	260,600
기타운용수익	25,714,289	0	0

운용비용	502,737,960	681,681,205	178,906,371
운용수수료	198,808,997	268,435,645	75,350,937
판매수수료	272,822,245	379,624,428	93,943,731
수탁수수료	12,424,557	16,775,403	4,707,460
사무수탁수수료	8,448,377	11,406,639	3,200,391
매매수수료	5,108,756	0	730,252
기타운용비용	5,125,028	5,439,090	973,60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322,467,810	4,522,580,170	424,956,629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3.24	73.15	22.9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20,243	20,243	19,248	19,776	18,096	17,880	22,117	23,463
2020/11/11~2021/11/10	22,117	22,117	112,763	121,576	40,836	44,424	94,765	105,191
2021/11/11~2022/05/10	94,765	94,765	56,042	56,230	60,808	61,272	100,425	100,321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W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0	0	0	0	0	0	0	0
2020/11/11~2021/11/10	0	0	0	0	0	0	0	0
2021/11/11~2022/05/10	0	0	0	0	0	0	0	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1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30	30	5,276	5,398	1,161	1,206	4,144	4,334
2020/11/11~2021/11/10	4,144	4,144	16,982	18,233	7,126	7,696	14,190	15,528

2021/11/11~2022/05/10	14,190	14,190	5,129	5,144	11,547	11,598	9,110	9,035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A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4,668	4,668	3,829	4,007	2,368	2,301	6,245	6,563
2020/11/11~2021/11/10	6,245	6,245	43,386	46,531	17,990	19,507	31,958	35,144
2021/11/11~2022/05/10	31,958	31,958	8,684	8,727	19,029	19,180	24,787	24,645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296	296	1,211	1,250	367	378	1,148	1,205
2020/11/11~2021/11/10	1,148	1,148	24,590	26,507	7,355	7,983	18,437	20,246
2021/11/11~2022/05/10	18,437	18,437	14,141	14,156	12,032	12,112	22,309	22,165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2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427	427	28	27	463	454	1	1
2020/11/11~2021/11/10	1	1	4,560	4,585	567	578	3,995	4,069
2021/11/11~2022/05/10	3,995	3,995	3,365	3,379	1,268	1,276	6,166	6,122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3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5,232	5,232	203	207	5,395	5,288	166	174
2020/11/11~2021/11/10	166	166	7	7	180	189	1	1
2021/11/11~2022/05/10	1	1	0	0	1	2	0	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S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76	76	106	110	71	72	113	119
2020/11/11~2021/11/10	113	113	6,203	6,587	1,560	1,701	4,762	5,248
2021/11/11~2022/05/10	4,762	4,762	208	210	317	319	5,138	5,114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4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2,046	2,046	5,913	5,901	2,692	2,690	5,321	5,598
2020/11/11~2021/11/10	5,321	5,321	1,256	1,323	1,264	1,353	5,587	6,151
2021/11/11~2022/05/10	5,587	5,587	1	2	884	888	5,268	5,24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I50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2,983	2,983	0	0	2,983	2,777	0	0
2020/11/11~2021/11/10	0	0	0	0	0	0	0	0
2021/11/11~2022/05/10	0	0	0	0	0	0	0	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P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400	400	929	966	485	505	854	898
2020/11/11~2021/11/10	854	854	1,338	1,417	554	597	1,682	1,850

2021/11/11~2022/05/10	1,682	1,682	569	570	579	582	1,839	1,828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P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3,732	3,732	793	806	1,107	1,120	3,519	3,702
2020/11/11~2021/11/10	3,519	3,519	4,935	5,288	1,242	1,330	7,395	8,141
2021/11/11~2022/05/10	7,395	7,395	2,958	2,972	2,056	2,072	9,043	8,996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A-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6	6	57	60	4	4	60	63
2020/11/11~2021/11/10	60	60	1,272	1,364	363	391	972	1,071
2021/11/11~2022/05/10	972	972	2,357	2,369	659	664	2,767	2,754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P-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1/11~2020/11/10	486	486	582	598	364	369	718	756
2020/11/11~2021/11/10	718	718	7,409	7,981	1,368	1,488	6,797	7,488
2021/11/11~2022/05/10	6,797	6,797	3,588	3,604	2,438	2,451	8,637	8,596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P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11/03~2021/11/10	6	6	6	6	0	0	6	6
2021/11/11~2022/05/10	6	6	999	998	440	444	565	56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Class-Cf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 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 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6~2022/05/10	5,000	5,000	5,000	5,000	0	0	5,000	5,043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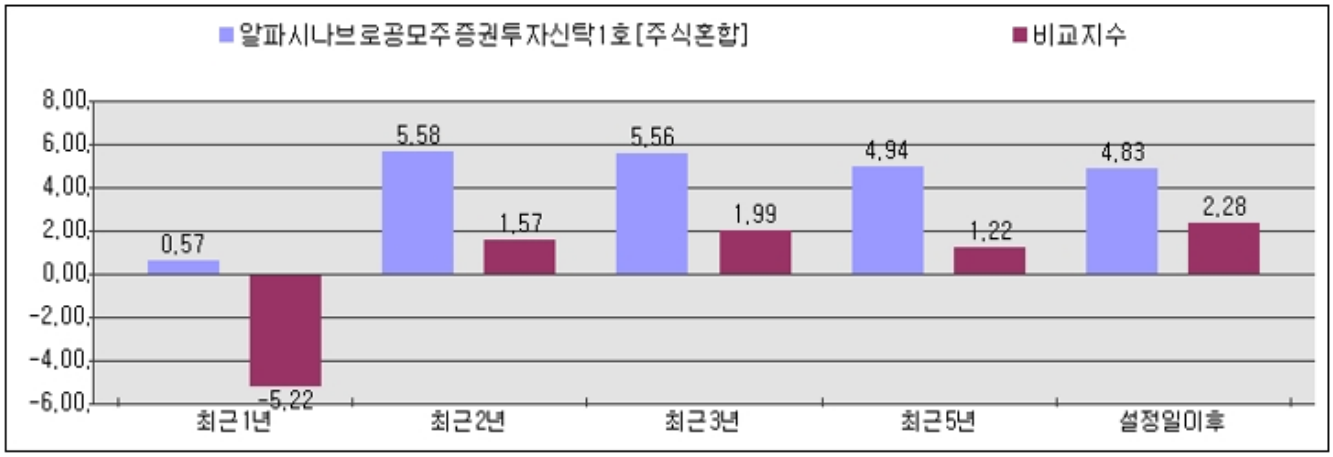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21/07/21 ~ 2022/07/20	2020/07/21 ~ 2022/07/20	2019/07/21 ~ 2022/07/20	2017/07/21 ~ 2022/07/20	(%)
알파시나브로공모주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2011-11-11	0.57	5.58	5.56	4.94	4.83
비교지수	2011-11-11	-5.22	1.57	1.99	1.22	2.28
수익률 변동성(%)	2011-11-11	4.28	4.7	5.3	4.18	3.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2011-11-11	0	0	0	-0.07	-0.07

비교지수	2011-11-11	0	0	0	-0.86	-0.13
수익률 변동성(%)	2011-11-11	0	0	1.32	1.32	1.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2011-11-16	-0.87	4.08	4.06	3.4	2.45
비교지수	2011-11-16	-5.22	1.57	1.99	1.22	1.39
수익률 변동성(%)	2011-11-16	4.28	4.71	5.3	4.18	3.5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2-01-18	-0.38	4.59	4.58	3.95	3.67
비교지수	2012-01-18	-5.22	1.57	1.99	1.22	2.17
수익률 변동성(%)	2012-01-18	4.28	4.71	5.3	4.18	3.5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2-03-02	-0.53	4.44	4.42	3.8	3.44
비교지수	2012-03-02	-5.22	1.57	1.99	1.22	2.03
수익률 변동성(%)	2012-03-02	4.28	4.71	5.3	4.18	3.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012-11-20	-0.68	4.08	4.13	3.52	2
비교지수	2012-11-20	-5.22	1.38	1.87	1.15	1.22
수익률 변동성(%)	2012-11-20	4.28	4.67	5.28	4.17	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013-11-18	0.78	5.15	4.92	0	2.32
비교지수	2013-11-18	-2.77	2.87	2.86	0	1.03
수익률 변동성(%)	2013-11-18	3.42	4.33	5.08	4.09	3.8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0.18	4.8	4.79	4.18	4.24
비교지수	2014-04-22	-5.22	1.57	1.99	1.22	1.91
수익률 변동성(%)	2014-04-22	4.28	4.71	5.3	4.18	3.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014-12-15	-0.28	4.7	4.68	4.02	3.62
비교지수	2014-12-15	-5.22	1.57	1.99	1.22	1.96
수익률 변동성(%)	2014-12-15	4.28	4.71	5.3	4.18	3.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50)	2016-06-10	0	0	-1.96	0.08	0.52
비교지수	2016-06-10	0	0	-1.53	-0.89	0.1
수익률 변동성(%)	2016-06-10	0	0	3.02	2.5	2.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16-08-30	-0.38	4.59	4.58	3.95	3.71
비교지수	2016-08-30	-5.22	1.57	1.99	1.22	1.85
수익률 변동성(%)	2016-08-30	4.28	4.71	5.3	4.18	3.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2016-09-02	-0.28	4.7	4.68	4.06	3.82
비교지수	2016-09-02	-5.22	1.57	1.99	1.22	1.85
수익률 변동성(%)	2016-09-02	4.28	4.71	5.3	4.18	3.88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03-13	-0.18	4.8	4.79	4.21	3.87
비교지수	2017-03-13	-5.22	1.57	1.99	1.22	1.81
수익률 변동성(%)	2017-03-13	4.28	4.71	5.3	4.18	4.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2018-10-31	-0.2	4.78	4.77	0	4.31
비교지수	2018-10-31	-5.22	1.57	1.99	0	2.19
수익률 변동성(%)	2018-10-31	4.28	4.71	5.3	0	4.7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1-11-03	-	-	-	-	-3.35
비교지수	2021-11-03	-	-	-	-	0
수익률 변동성(%)	2021-11-03	-	-	-	-	3.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2-01-26	-	-	-	-	-1.29
비교지수	2022-01-26	-	-	-	-	-4.61
수익률 변동성(%)	2022-01-26	-	-	-	-	4.2

(주 1) 비교지수 : (KOSPI X 20% + KOBI120 X 50% + CD91 X 3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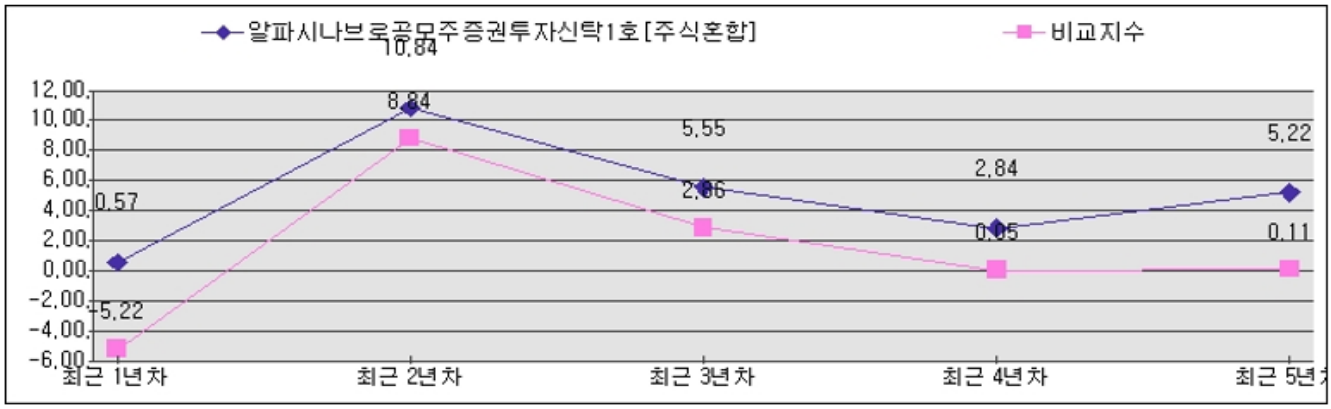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021/07/21 ~ 2022/07/20	2020/07/21 ~ 2022/07/20	2019/07/21 ~ 2022/07/20	2018/07/21 ~ 2022/07/20	2017/07/21 ~ 2022/07/20
알파시나브로공모주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2011-11-11	0.57	10.84	5.55	2.84	5.22
비교지수	2011-11-11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2011-11-11	0	0	0	0	4.7
비교지수	2011-11-11	0	0	0	0	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2011-11-16	-0.87	9.28	4.05	1.37	3.48
비교지수	2011-11-16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2-01-18	-0.38	9.81	4.56	1.87	4.14
비교지수	2012-01-18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2-03-02	-0.53	9.65	4.41	1.72	4.03
비교지수	2012-03-02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012-11-20	-0.68	9.06	4.26	1.57	3.65
비교지수	2012-11-20	-5.22	8.43	2.86	0.05	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013-11-18	0.78	9.71	4.46	1.77	0

비교지수	2013-11-18	-2.77	8.84	2.86	0.05	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0.18	10.03	4.77	2.09	4.45
비교지수	2014-04-22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014-12-15	-0.28	9.92	4.67	1.98	4.07
비교지수	2014-12-15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50)	2016-06-10	0	0	-5.78	2.08	4.39
비교지수	2016-06-10	0	0	-4.54	0.05	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16-08-30	-0.38	9.82	4.56	1.87	4.18
비교지수	2016-08-30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2016-09-02	-0.28	9.92	4.67	1.97	4.29
비교지수	2016-09-02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03-13	-0.18	10.03	4.78	2.14	4.59
비교지수	2017-03-13	-5.22	8.84	2.86	0.05	0.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P-E)	2018-10-31	-0.2	10.01	4.75	1.76	0
비교지수	2018-10-31	-5.22	8.84	2.86	2.17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1-11-03	-2.39	0	0	0	0
비교지수	2021-11-03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2-01-26	0	0	0	0	0
비교지수	2022-01-26	0	0	0	0	0

(주 1) 비교지수 : (KOSPI X 20% + KOBI120 X 50% + CD91 X 3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2.05.10 현재 /단위 : 백만,%]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18,799	30,152	0	6,207	0	0	0	0	0	7,203	38,118	100,478
	(18.71)	(30.01)	(0.00)	(6.18)	(0.00)	(0.00)	(0.00)	(0.00)	(0.00)	(7.17)	(37.94)	(100.00)
자산합계	18,799	30,152	0	6,207	0	0	0	0	0	7,203	38,118	100,478
	(18.71)	(30.01)	(0.00)	(6.18)	(0.00)	(0.00)	(0.00)	(0.00)	(0.00)	(7.17)	(37.9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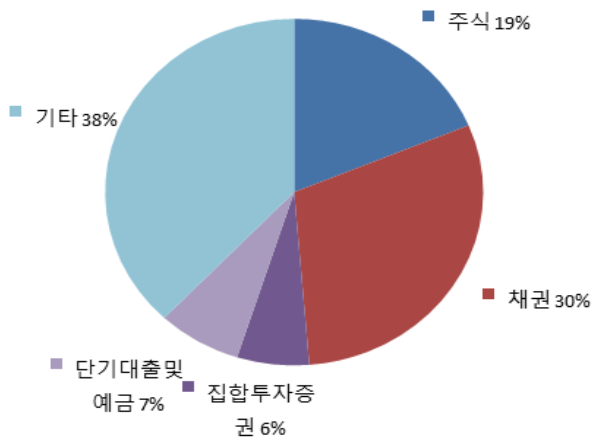
주식 19%
채권 30%
집합투자증권 6%
단기대출및예금 7%
기타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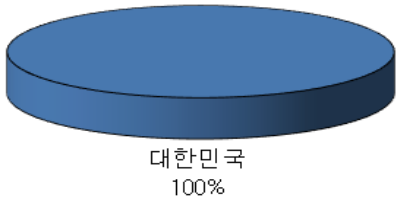
대한민국
1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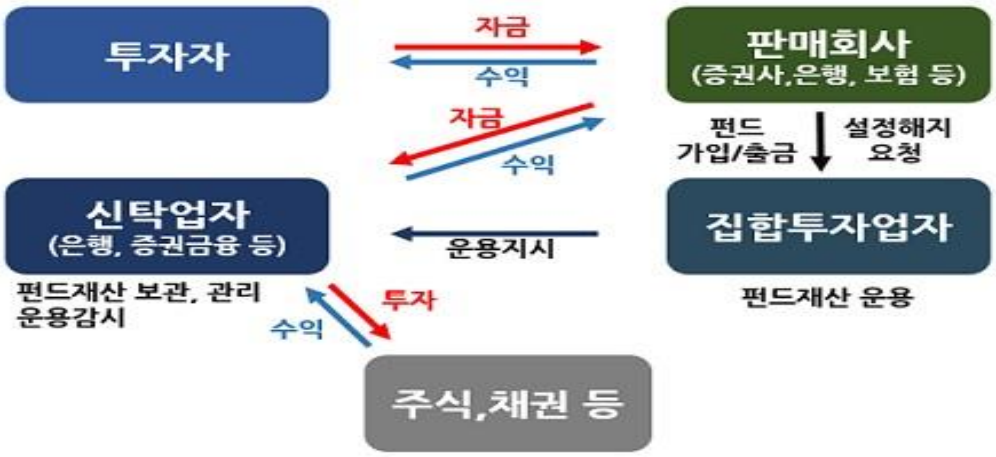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SK증권빌딩 9층 (연락처 : 02-769-7600, www.alphasset.com)
회사 연혁	2002. 07. 24 알파자산운용㈜ 법인설립 2002. 08. 2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2004. 03. 30 상호변경 (구) 알파자산운용㈜ 2004. 03. 31 자본금 100억으로 증자 2006. 01. 31 수탁고 1조 돌파 2007. 12. 31 우정사업본부 우수 운용사 표창 2008. 04. 18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채권형 일임 운용사 선정 2009. 07. 3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절대수익추구형 운용사 선정 2010. 02. 05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수채권형 운용사 포상 2010. 09. 17 수탁고 2조 돌파 2010. 11. 09 수탁고 3조 돌파 2011. 07. 11 국민연금관리공단 부동산 위탁운용사 선정 2014. 11. 06 수탁고 4조 돌파 2019. 10. 14 상호변경 (구) 알파에셋자산운용㈜ -> (신)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2021. 12. 21 수탁고 1조 달성
자본금	100억
주요주주현황	최곤 51%, 최준혁 49%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②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③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④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기준일 : 2021.12.31 / 단위: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1.12.31	'21.3.31	항 목	'21.12.31	'21.3.31
유동자산	52.3	109.8	영업수익	89.2	109.0
고정자산	107.6	73.8	영업비용	83.8	107.2
자산총계	159.9	183.5	영업이익	5.4	1.8
유동부채	20.4	47.4	영업외수익	0.0	0.2
고 정 부 채	5.8	7.9	영업외비용	0.0	0.0
부채총계	26.2	55.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4	2.0
자본금	100.0	100.0	법인세비용	0.0	0.0
이익잉여금	33.7	28.2	당기순이익	5.4	2.0
자본총계	133.7	128.2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7.20 현재 / 단위:억원)

구분	증권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투자회사	총 계
	주식	혼합형	채권	재간접							
수탁고	586	1,916	109	0	0	0	1,584	8,228	185	147	12,755

주1) 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연락처 : 3770-88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1955.10 설립 (http://www.ksfc.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이 적정하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 02) 6714-46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3.04.01 회사 설립 (www.hanais.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②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업무

③ 집합투자업자에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④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번지 ☏ 02-2251-13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회 사 명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회 사 명	NICE피앤아이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70길19(여의도동) ☏02-398-39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nicepni.com
회 사 명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⑧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⑩ 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합병은 제외)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의 주체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알파자산운용 홈페이지(www.alph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④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 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기타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3)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전화,전신,모사전송,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2)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②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③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⑧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상기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9조와는 별개로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보상금액: 집합투자규약 제39조에 따른 보수율 *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계산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법률 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규약 제37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alphasset.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하는 방법,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투자신탁 최초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⑨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① 거래 체결 능력: 당사 주문에 대한 체결의 신속성 및 정확성 ② 정보 제공: 시장 정보(뉴스,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제공 능력 ③ 리서치 및 세미나: 증권사 자체 리서치 능력, 세미나 제공

	④ 결제 업무: 매매 등에 대한 결제 및 업무 처리 신속성 및 정확성 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체결 및 호가에 대한 우월성이 생기며, 이에 따라 당사는 펀드 이익 기여를 위해 우월성을 지닌 증권사를 선정. 월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월성을 지닌 증권사를 선정함.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헷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 과 보 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 산 유 동 화 증 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 환 사 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 식 워 런 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 헷 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통화로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헷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